

● 제28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2. 2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 송정빈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445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송정빈 의원의 15명
- 나. 제안일 : 2019. 2. 7.
- 다. 회부일 : 2019. 2. 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최근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을 포괄적이고 개념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시 차원의 실제적 지원이 수요대비 저조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 사항과 시설규모 및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시장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제2항 신설)

- 시장이 노인복지시설의 규모 및 노후화 등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안 제14조제2항제1호는 노인복지시설의 시설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기능보강 사업 등의 형태로 예산이 기 지원 중이고 조례에 세부적인 지원 내역을 명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사료됨.

**※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참고1)**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립시설의 경우에는 자치구가 비용부담 주체가 되므로 시가 지원하는 것은 보조적 지원으로 사안으로 여겨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2조(비용의 부담)

③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지원 기준 및 내역이 상이하게 지원되며, 개정안에서 규정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 또한, 세부 지원 내역은 연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편성·계획 수립 시 반영할 사항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조례에 나열하는 것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정형화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안 제14조제3항은 노인관련시설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sup>1)</sup>과 차등지원 근거를 신설하

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매 3년 주기마다 평가하고 있으며 그 평가 및 지원방향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추진 및 형평성 등 위배 소지가 존재함.
- 현재 이용인원 및 종사자 인원 등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 것은 현재 서울시는 지양하고 있음.
- 또한, '18년부터 도입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평가결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서열화를 지양 있음. 다만, 우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사회복지시설은 컨설팅 지원 등을 중점으로 시행 계획 중임.
- 검토하건데, 실적평가에 의한 미흡시설에 대한 차등지원은 시설 낙후를 가속화하여 그로 인한 결과는 이용시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용환경 변화 등 특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 필요할 경우, 자치구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개별사안에 적합한 대안이 필요함.

1) 평가항목 : 이용민원, 시설규모 및 노후화,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등

### 3 종합 의견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립시설의 경우 자치구가 비용부담 주체이므로 시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정형화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 차등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일관된 정책추진 및 형평성 등 위배 소지가 존재함.
- 평가결과로 인한 차등지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서열화하는 등의 부정적 효과 및 위배의 소지가 존재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 낙후를 가속화하여 그 결과는 이용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서울시는 현재 이용인원 및 종사자 인원 등 시설규모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실적에 따라 차등 보조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음.
- 따라서 금번 개정안은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항들이 기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의 주체가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그 규정을 시행할 경우 시설의 서열화를 야기하는 등의 위배의 소지가 존재하는 바,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이용환경 변화 등의 특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자치구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등 개별사안에 대한 개별적으로 적합한 대안으로 접근할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1** 노인복지시설 예산 지원현황(총 3,821개소 지원, 시립72개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시설수	지원예산현황(국비, 시비)					기 능 보강비	보조비율 (국:시:구:자체)
		소계	인건비	운영비	기타	기 능 보강비		
계	5,232 (3,821)	80,624	36,968	36,516	3,621	4,949		
주거 복지 시설	무 료	7(7)	5,456	5,063	310	82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강 화 : 1,431	(인건비) 50:50:0:0 - 추가인력인건 비 및 급여차 액 보전수당은 시비 100% (관리운영비) 50:50:0:0 (기타) 0:100:0:0
	일 반	4	0	0	0	0		0 : 0 : 0 : 0
	공동생활가정	2	0	0	0	0		0 : 0 : 0 : 0
	복지주택	11	0	0	0	0		0 : 0 : 0 : 0
의료 복지 시설	요양시설	208(61)	6,201	1,450	4,751			50:30:20:10
	노인요양 생활가정	318(12)						50:30:20:10
여가 복지 시설	노인종합 복지관	35(23)	31,948	20,932	7,498	-	여 가 복지시설 기능강 화 : 3,518	0:100:0:0
	소규모노인 복지센터	47	1,000	-	-	1,000 (건립)		운영비 : 구비(100) 건립비 : 시비 (1개 1,000백만원)
	경로당	3,432 (3,432)	13,878	1,107	10,884	1,887		10:52:38:0
	노인교실	373(25)	188	-	152	36		0:100:0:0
재가 복지 시설	주야간보호	344(192)	12,267	221	11,866	180		0: 100: 0:0
	단기보호	34	0	0	0	0		0
	재가 어르신지원	28(28)	5,643	4,963	658	22		50:25:25:0
	방문요양	124	0	0	0	0		0
	방문목욕	96	0	0	0	0		0
기타 시설	노인보호 전문기관	3(3)	1,186	986	62	138		50:50:0:0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1(1)	185	103		82		50:50:0:0
	시니어클럽	11(11)	2,582	2,143	335	104		(시비:구비) 30~70 : 70~30 재정자립충족도 차등지급
	노인의집	43(43)	90	0	0	90		(임차보증금) 0:100:0:0

※ ( ) 안의 시설수는 보조금 지원시설